

수원지방법원 2023. 6. 8 선고 2021나6970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3. 5. 11.

판 결 선 고 2023. 6. 8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4. 28. 선고 2020가소28774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,73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사안의 개요 및 판단

가. 갑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. 2. 11. 피고에게 150만원을, 2016. 1. 11. C에게 100만원을, 같은 달 28. 주식회사 D에 100만원을, 2016. 2. 13. 피고에게 100만원을 송금 내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.

나. 원고는 피고가 월남참전 고엽제 유공자등급을 위한 보훈처 공무원 및 담당 의료인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위 가.항 기재 각 돈을 포함하여 총 473만원을 받고도 원고로 하여금 유공자등급을 받도록 하지 못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거나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, 을제4호증, 을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2022. 1. 25.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하였으나 기각된 사실{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2초재77 결정}이 인정될 뿐이다.

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이은희, 판사 이국현, 판사 김용태